##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2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조인철·정진욱·민형배

정준호 · 이재관 · 김 현

김 유·전진숙·황정아

채현일 • 양부남 • 박균택

정동영 · 오세희 · 이훈기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 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했음. 이를 위해 미래차 3강전략 수립('22.9월), 미래차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23.5월), 미래차법 제정('23.12월) 등 미래차 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은 전체 차량 대비 2.3% 수준(누적기준, 약 60만대)에 불과하며, '24년 상반기 신차판매 기준으로도 8.2%(약 6만7000대)로 본격적인 보급 활성화 궤도에 올랐

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더군다나,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일몰될 경우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지연 및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위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현행 2024 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24년"을 "2028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24년"을 "2028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2024년"을 "2028년" 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	③		
터 <u>2024년</u> 12월 31일까지 제조	<u>2028년</u>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	⑥		
터 <u>2024년</u> 12월 31일까지 제조	<u>2028년</u>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	9		
터 <u>2024년</u> 12월 31일까지 제조	<u>2028년</u>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		